

현안과제연구

2010. 7. 10

# 충남도장학회 장학기금 유치확대 및 모금활동 세부추진방안 연구

연구수행 : 송 두 범

# 목 차

I. 지역인재육성의 의의 .....	1
II. 자치단체 장학재단 현황 .....	3
III. 충청남도장학회의 여건 및 육성방안 .....	12
IV. 정책과제 .....	19

# 연구내용 요약

## 1. 지역인재육성의 의의

### 1)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

- 피터 드러커, 마이클 포터, 이견희 회장, 백거이, 나폴레옹 등은 인재 육성의 필요성 강조

### 2) 지역인재의 개념

- 지역에 애정을 가진 개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여러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 2. 자치단체 장학재단 현황( ※전북, 전남, 충북, 충남비교)

### 1) 명칭

- 인재육성 및 인재양성재단

### 2) 기금규모

- 103억원에서 353억원 규모

### 3) 주요사업

- 장학금 지급 뿐 아니라 서울장학숙 운영, 대학생학자금 대출, 청소년보호 및 육성, 인재양성 정보화시스템 구축, 저소득멘토링 사업, 후원회조직 및 운영 등 확장된 개념

### 4) 연간 사업비

- 12.5억원에서 98억원

### 5) 사무국 인원

- 3명에서 5명 규모

### 6) 도청 담당부서

- 과 단위부서 설치(인재양성과, 행정혁신과)

### 7) 후원회 운영

- 후원금액에 따른 다양한 혜택부여
  - 후원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혜택
  - 재단이사 임명, 도 소유시설 이용, 감사패, 소식지발송, 도 단위 각종행사참여 등

### 3. 충남도 장학회의 여건 및 운영방안

#### 1) 여건분석

<div data-bbox="225 660 715 734" data-label="Section-Header"> <h4>강점(Strength)</h4> </div> <ul data-bbox="225 808 762 1227"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5기 도정공약사업으로 제시</li> <li>• 도지사의 인재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li> <li>• 장학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li> <li>•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가시화</li> <li>• 장학재단 내부의 적극적 육성의지</li> </ul>	<div data-bbox="810 660 1321 734" data-label="Section-Header"> <h4>약점(Weakness)</h4> </div> <ul data-bbox="810 808 1378 1227"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금모금</li> <li>• 자체사업을 통한 기금모집방안 부재</li> <li>• 충남학사와의 분리운영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통합성 부족</li> <li>• 시군장학회와의 연계부족</li> <li>• 서울학사 미설치</li> <li>•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 인재육성 업무 영역의 미정립</li> <li>• 장학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li> <li>• 재단 위치 및 업무공간 협소</li> </ul>
<div data-bbox="225 1332 715 1406" data-label="Section-Header"> <h4>기회(Opportunity)</h4> </div> <ul data-bbox="225 1480 762 1899"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 인식증대</li> <li>• 인재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 강화</li> <li>• 지속적 기업입지 등으로 기업과의 우호적 협력환경 조성</li> <li>• 기금모금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활용 가능성</li> <li>• 도지사로의 이사장 변경으로 장학회 위상 강화</li> </ul>	<div data-bbox="810 1332 1321 1406" data-label="Section-Header"> <h4>위협(Threat)</h4> </div> <ul data-bbox="810 1480 1378 1899"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 심화</li> <li>•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직접모금 어려움</li> <li>• 시군 장학회와 기부금품 모집시 경쟁관계 조성가능성 상존</li> <li>• 장학혜택 받은 지역인재의 충남도 기여에 대한 도민공감대 미확인</li> </ul>

## 2) 충남도장학회 운영방안

구 분	주요내용
재단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2011년)</li> </ul>
사업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우수인재 및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사업</li> <li>•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li> <li>• 학생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li> <li>• 교육운영 개선 사업</li> <li>• 인재발굴·양성 정보화시스템 구축</li> <li>• 지역지도자의 발굴 및 양성지원</li> <li>•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등</li> </ul>
서울소재 학숙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학생 기숙사업 공동투자</li> <li>• 충청남도 단독 서울학사 건립</li> </ul>
기부자 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회 정관에 기부자 예우 명시</li> </ul>
장학수혜자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수혜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li> <li>• 장학수혜자와 장학회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 구축</li> <li>• 장학수혜자간 조직 결성 및 운영 등을 통한 장학회와 장학수혜자, 장학수혜자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ul>
유사장학회 및 시군장학회와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장학회 장학수혜 대상자 선발시 시군장학회 추천의무화</li> <li>• 충청장학문화재단과의 정보공유</li> </ul>

#### 4. 충남도장학회의 기금조성방안

구 분	주요내용
<p>장학회 자체조성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오케스트라 설립</li> <li>• 충남학생국악단 설립</li> <li>• 문화, 예술, 스포츠단체와 연계하여 전시회, 연주회, 스포츠대회 개최하여 장학기금 조성</li> </ul>
<p>지역사회와 협력 통한 조성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탁자의 실명으로 장학기금 관리</li> </ul> </li> <li>• 소액분할 장기기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로 및 자동납부제 활용</li> </ul> </li> <li>• 충남도내 기업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부 일정금액 장학기금 조성</li> <li>- 주류 및 음료회사, 도시가스, 골프장, 건설회사, 금융기관</li> </ul> </li> <li>• 충남도금고 은행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인재육성통장, 충남사랑통장 상품개발 일부적립</li> <li>- 충남도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li> <li>- 충남사랑 장학카드 발급</li> </ul> </li> <li>• 충남도 출향인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향인단체 대표와 도지사간 간담회 개최</li> </ul> </li> <li>•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 개최</li> </ul>
<p>충남도의 지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및 시군차원의 출연금 확대</li> <li>• 충남도 공무원 및 의회의원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및 의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공무원과 구성원의 자발적 기금후원</li> </ul> </li> <li>• 각종 이벤트 및 축제이용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주최 행사 입장권에 장학기금 부과</li> <li>- 충남도 주최 행사 참가비에 장학기금 부과</li> <li>- 충남도산하 기업 및 단체 주최 스포츠대회 참가비에 장학기금 부과</li> </ul> </li> <li>• 충남도 소유 도립공원 및 박물관이용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료에 장학기금 부과</li> </ul> </li> </ul>

# I. 지역인재육성의 의의

## 1.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

- 피터 드러커(P. Drucker)
  - 지식사회에서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자본'이나 '노동'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될 것이다.
  
-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이며 지식정보시대 최대 패러다임은 사람의 가치 창조라고 하였다.
  
- 이건희 회장
  - 21세기는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전쟁의 시대로 결국 뛰어난 인재, 창조적인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천재와 우수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게 나의 신념이다.
  - 비단잉어 인재론을 주창하면서, 한 사람의 핵심인재가 만명, 십만명을 먹여 살린다.
  
- 백거이(白居易)
  - “옥돌은 시험하려면 꼬박 사흘을 불에 넣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인재는 7년은 족히 기다려야 가릴 수 있다(試玉要燒三日滿, 辯材須待七年期)”고 하였다. 인재를 찾는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지만, 인재 육성에는 그만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나폴레옹

- 인재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난 앞뒤 가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인재를 얻을 수 있다면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염치를 무릅쓰고 아부하는 일조차 마다하지 않겠다.

## 2. 지역인재의 개념

- 인재(人才)의 사전적 의미

-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 지역인재

-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 인적자원

- 국민 개개인,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조)

## Ⅱ. 자치단체 장학재단 현황분석

### 1. 전북인재육성재단

#### 1) 조직현황

- 설립연도 : 1992년(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변경 : 2006년)
- 이사회, 사무국,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으로 구성
  - 임원 : 19명(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 사무국장 1인, 총무부장 1인, 직원 3명

#### 2) 기금현황

- 2010년 현재 103억원
  - 도출연금 : 20억원
  - 시군출연금 : 21억원
  - 성금 : 14억원
  - 이자수입 등 48억원

#### 3) 주요사업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정관 제4조
  -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사업
  - 글로벌체험(연수) 등을 위한 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및 장학숙 운영사업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 등 특별지원사업
  - 산학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

-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 제8조
  -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사업
  - 글로벌체험(연수) 등을 위한 지원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숙 운영의 지도감독
  - 후원회 조직 및 운영
  - 평생교유 및 인재양성 관련 시설운영사업
  - 대학생 학자금 재출에 대한 이자 지원사업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글로벌체험해외연수지원	초중대학생 1,000명 내외	1,00명 내외
장학숙 운영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608명
청운관 운영	서울장학숙내 고시원	64명
일반장학금 지원	4년제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	산업체 특별학급 고등학생	

#### 4) 사업실적

- 입사생 선발현황

구 분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선발인원	3,132명	2,210명

○ 학교별 입사생 선발현황

구 분	서울장학숙(명)	구 분	전주장학숙(명)
계	3,132	계	2,210
서울대	811	전북대	1,418
고려대	301	전주대	176
연세대	239	전주교대	372
이화여대	124	우석대	35
한양대	211	예수대	69
기타	1,446	기타	140

○ 장학금 지급현황(천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선발인원	1,315,000	2,49,240	247,150	254,160	242,570	145,190	2,453,310

5) 서울장학숙

- 장학숙 개원 : 1992년 3월 7일
- 장학숙 규모 : 연면적 8,669m<sup>2</sup>(지하 1층, 지상5층)
- 수용인원 : 308명
- 시설
  - 숙실(154실), 청운관(고시원), 도서관(12석), 사무실, 식당, 휴게실, 세탁실, 전기실, 보일러실, 통신시설, 온돌난방 등
- 부담금 : 입사비 7만원, 월부담금 15만원

## 2. 전남인재육성재단

### 1) 조직현황

- 설립연도 : 2008년
- 이사회, 사무국, 후원회로 구성
  - 임원 : 17명(이사장, 이사, 감사)
  - 사무국장 1인, 총무부장 1인, 직원 3명

### 2) 기금현황

- 기금조성 목표액 : 500억원(2011년까지)
- 2009년 현재 312억원
- 기금추가 조성계획(2010년) : 90억원

### 3) 주요사업

-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 정관 제4조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 사업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 사업
  -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 세부사업

-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금 지급
-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 사업
- 글로벌 학생어학능력 향상 사업
-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 향토교사 및 지원사업
- 수익사업 발굴
-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 청소년 활동지원 및 청소년 이용시설 책보급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운영
- 학자금 지원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2010년 사업계획

- 2010년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 농어촌학생 영어 화상교육 운영

**4) 사업실적**

○ 장학금 지원실적

구 분	인원	지원액
지원금액	15,672명	12,371,500원

○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 사업비 50백만원

- 청소년승마체험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다례 아카데미 운영
- 2009년 전국 청소년 캠프
- 하계문화체험 캠프
- 늘푸른 행복지킴이 캠프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 장학금 지원(2010년 상반기)

구 분	인원(명)	지원액(천원)	비 고
계	535	521,000	
그린전남 복지장학생	309	288,000	저소득 자녀, 희망나눔, 사회봉사 및 근로, 다문화가정
그린전남 인재장학생	188	293,000	성적우수, 예체능 특기, 미래인재, 전남도립대학, 전문대학생, 특수교 육성, 글로벌
도정발전유공 분야 장학생	38	40,000	전략산업육성, 미래인재, 다산장려

### 5) 남도학숙

- 장학숙 개원 : 1994년 2월
- 장학숙 규모 : 연면적 32,577㎡(지하 3층, 지상11층)
- 수용인원 : 8108명
- 소요비용 : 278억원(시도민 성급, 지방비, 국비)

### 3) 후원

- 개인후원회 운영위원 추대 : 개인 1억원 이상, 단체 5억원 이상 기탁자
- 전라남도 관리시설 무료이용혜택

-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 재단홈페이지 후원회 명단 게재

### 3. 충북인재양성재단

#### 1) 조직현황

- 설립연도 : 2008년 3월 18일
- 이사회, 사무국, 인재양성추진협의회 등으로 구성
  - 임원 : 26명(이사장, 이사, 감사)
  - 사무국장 1인, 직원 3명

#### 2) 기금현황

- 2009년 현재 236억원
  - 도시군출연금 : 170억원
  - 청풍, 문정 36억원
  - 기탁금 : 30억

#### 3) 주요사업

- 충청북도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 충청북도인재양성 재단 정관 제5조
  -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위임·위탁하는 사업

#### 4) 사업실적

구 분	인원	지급금액
장학금	988명	1,598,020천원

#### 5) 명예의 전당

- 재단이사 추대
  - 개인 5억원 이상, 단체 10억원 이상 기탁자
- ※ 재단정관 임원 정수(33인) 내에서 이사회회의 의결로 선임직 이사 선임
- 도민 명예의 숲 나무심기 및 표찰
  - 개인 1천만원 이상, 단체 5천만원 이상 기탁자
  - 산림환경연구소 미동산수목원 내
- 도지사 면담 및 감사패 수여
  - 개인, 단체 5백만원 이상
- 조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 개인 5백만원 이상, 단체 1천만원 이상
  - 사용횟수 : 1회
- 감사패 수여
  - 개인 100만원이상-5백만원 기탁자
- 청남대 입장료 면제
  - 개인 1만원 이상, 단체 1백만원 이상 기탁자(1회 한)
- 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 기탁금 및 후원회비는 연말정산시 전액소득공제 영수증 발행

#### 4. 종합 및 시사점

구분	전 북	전 남	총 북	총 남
명칭	전북인재육성재단	전남인재육성재단	총북인재양성재단	총남장학회
설립 연도	1992	1999	2008	2000
기금액	103억원	353억원	294억원	84.3억원
주요 사업	장학금지급 우수인재육성 사업 글로벌체험 연수지원 서울장학숙 운영 전주장학숙 운영 저소득층 멘토링사업 글로벌 인재육성 후원회 조직 및 운영 대학생학자금 대출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 조성·관리 우수인재육성 남도장학숙 운영 글로벌인재 학생어학 능력 향상사업 교육운영여건 개선 청소년보호 및 육성 학자금 지원 상담자	장학금지급 서울장학숙 운영 인재양성기본계획수립 미래인재 양성 인재양성 정보화시스 템 구축	장학금지급 장학시설운영 학술연구지원사업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비	98억원	12.5억원	18억원	11억원
사무국	사무국 5명	사무국3명	사무국 4명	사무국 3명
담당 부서	인재양성과	행정혁신과	인재양성과	교육협력 법무담당관
후원회 운영	후원회 운영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 수증 발행 -재단 정기소식지 발송 -재단 각종행사참여 등	후원금액에 따른 다양 한 혜택부여 -개인후원회 운영위원 추대 -전남관리시설무료이용 -소득공제 영수증발행 -재단홈페이지 후원회 명단게재	후원금액에 따른 다양 한 혜택부여 -재단이사 추대 -도민 명예의 숲 나무 심기 및 표찰 -도 휴양림시설 사용료 면제 -감사패수여 -청남대 입장료 면제	세제혜택 및 명예의 전 당운영 -연말정산시 세금혜택 -명예의 전당

### Ⅲ. 충남도 장학회의 여건 및 육성방안

#### 1. 충남도 장학회의 여건(SWOT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b>강점(Strength)</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선5기 도정공약사업으로 제시</li> <li>• 도지사의 인재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li> <li>• 장학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li> <li>•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가시화</li> <li>• 장학재단 내부의 적극적 육성의지</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약점(Weaknes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금모금</li> <li>• 자체사업을 통한 기금모집방안 부재</li> <li>• 충남학사와의 분리운영에 따른 인재육성 사업의 통합성 부족</li> <li>• 시군장학회와의 연계부족</li> <li>• 서울학사 미설치</li> <li>• 충남도와 충남교육청간 인재육성 업무 영역의 미정립</li> <li>• 장학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li> <li>• 재단 위치 및 업무공간 협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기회(Opportunity)</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 인식증대</li> <li>• 인재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역할 강화</li> <li>• 지속적 기업입지 등으로 기업과의 우호적 협력환경 조성</li> <li>• 기금모금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활용 가능성</li> <li>• 도지사로의 이사장 변경으로 장학회 위상 강화</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위협(Threa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우수 인재의 역외유출 심화</li> <li>•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른 직접모금 어려움</li> <li>• 시군 장학회와 기부금품 모집시 경쟁관계 조성가능성 상존</li> <li>• 장학혜택 받은 지역인재의 충남도 기여에 대한 도민공감대 미확인</li> </ul>

## 2. 충청남도 장학회 육성방안

### 1) 기본방향

- 충청남도 장학회는 지금까지 장학금 지원을 통한 협의의 인재육성지원이라 틀에서 탈피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과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종합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방향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역인재의 발굴 및 육성, 배분의 역할 담당

### 2) 세부 육성방안

#### (1) 재단의 명칭변경

- 전국 광역자치단체 11개 광역자치단체에 장학재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인재육성재단 4개, 인재양성재단 1개, 장학회 3개, 장학재단 3개 소임
- 따라서, 인재육성 또는 양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충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충남희망교육재단”의 설립(2011년)은 바람직함

#### (2) 사업영역의 확대

- 충청남도 장학회에서는 장학생 학자금지원사업(영재육성, 근로청소년, 자활지원, 자립지원), 공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 도비유학장학생 지원, 전문계고등학교 우수인력, 전통문화계승장학금지원, 새터민 자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중임

- 그러나 충남도장학회 설치조례에 제시된 장학회 사업이 타 자치단체 장학재단에 비해 협소한 다음과 같음
  - 장학지원사업 및 장학시설운영
  - 학술 연구·지원사업
  - 학생기숙사 운영사업
  
- 참고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의 경우를 종합하여 충남도 장학회의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우수인재 및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사업
  -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 학생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 교육운영 개선 사업
  - 인재발굴·양성 정보화시스템 구축
  - 지역지도자의 발굴 및 양성지원
  -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등
  
- 따라서, 도 장학회설치조례 및 정관에 보다 글로벌 인재지원 및 확장된 개념의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명시해야 함

### (3) 서울소재 학숙 설치

- 전북도, 전남도, 충북도 등에서는 서울학숙을 운영중에 있음
- 현재, 충청남도 출신으로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 및 생활여건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가중됨
-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애향심 측면에서도 불리함
- 따라서, 서울지역에 충남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서울학숙을 건립할 필

요성이 있음

- 지방학생 기숙사업 공동투자, 충청남도 단독 서울학사 건립 등

#### (4) 인재육성기금 조성

- 기금조성은 장학회 자체기금 조성,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기금조성, 각종 이벤트를 통한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 구체적 기금조성 방안은 따로 제시함

#### (5) 기부자의 예우

- 충남 장학회의 경우 기부자이 예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그러나 충청북도의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다양한 예우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충남의 경우도 기부금액에 따른 예우수준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6) 장학수혜자의 사후관리

- 충남 장학회수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장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환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장학사업 추진에 기여
- 장학수혜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장학수혜자와 장학회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장학수혜자간 조직 결성 및 운영 등을 통한 장학회와 장학수혜자, 장학수혜자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7) 유사장학회 및 시군 장학회와의 연계체계 구축

- 충남도 장학회와 유사장학회, 시군장학회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 도와 시군간 중복장학수혜자의 발생가능성이 상존
- 우수인재의 경우 중복수혜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도와 유사장학회, 시군장학회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임
  - 도장학회 장학수혜 대상자 선발은 시군 장학회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람직함(현재 실시여부 확인 필요)
  - 또한, 충청장학문화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충청장학문화재단과도 정보공유가 필요함

### 3. 장학회 기금조성 방안

#### 1) 기본방향

- 충남 장학회의 기금확대 조성을 위해 장학회 자체의 기금조성, 기업 및 출향인사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기금조성, 충남도에서 추진중인 각종 이벤트를 통한 기금조성 등 다양한 기금조성방안을 검토함

#### 2) 세부 조성방안

##### (1) 장학회 자체조성 방안

- 충청도장학회가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등과 연계하여 모집 검토
  - (가칭)청소년오케스트라, (가칭)충남학생국악단 등과 같은 예술단체를 설립하여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금 모집
  - 당장 설립이 어렵다면, 도내 문화, 예술, 스포츠 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전시회, 연주회, 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학기금 조성

## (2) 지역사회와 협력 통한 조성방안

### ○ 지정기탁제도의 도입

- 일정금액 이상의 기탁자 및 단체에 대해서는 기탁금 관리에 따른 일정의 이자수입을 기탁자의 기탁조건 즉, 지역, 대상, 자격, 기간에 따라 장학사업을 시행하는 지정기탁제도 시행, 홍보함으로써 도민참여유도
- 기탁자의 실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규정(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제정

(예) 홍길동 장학금 : 국기원 주최 태권도 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등

### ○ 소액분할 장기기탁 제도 도입

- 장기적 장학기금 조성취지를 감안하여 일시 기탁능력이 부족한 기탁자를 위해 소액분할 기탁제도를 도입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지로 및 자동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금확보

### ○ 충남도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방안

- 충남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충남도내 판매분의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협약을 충남도에서 체결하고 장학기금 조성
- 예) 주류 및 음료회사, 도시가스, 골프장, 건설회사, 금융기관

### ○ 충남도 관할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장학기금 조성방안

- 충남도금고 은행을 대상으로 (가칭) “충남인재육성통장” 또는 (가칭) “충남사랑통장”을 금융상품으로 개발하여 일부를 적립하여 충남장학회 기금으로 지원
- 충남도민이 ‘1도민 1계좌’ 갖기 운동 전개
- (가칭) ‘충남사랑장학카드’를 발급하여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를 장학기금으로 적립

- 충남도 출향인사 등을 이용한 장학기금 조성방안
  - 지역별 충남향우회 등 출향인사 모임을 활용하여 장학기금 조성
  - 충남도에서는 출향인 단체 대표를 충남도로 초청하여 도지사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 개최
  - 충남지역공무원, 충남지역소재 대학교수, 정치인 등의 출판기념회 개최시 일부 수익금을 충남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안 모색

### (3) 충남도의 지원방안

- 충남도, 시군차원의 출연금 확대
  - 충남도와 시군에서 충남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학회 출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기금조성
  - 충남도청 및 의회, 충남도 산하기관, 충남도 유관기관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기금 후원이 선행되어야 함
- 충남도가 개최하는 각종 이벤트 및 축제를 이용하여 장학기금 확충
  - 대백제전, 금산세계엑스포 등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 입장권에 장학기금을 일부 부과
  - 충남도지사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등산대회 등의 참가비에 장학기금 일부 부과
  - 충청남도 산하 기업 및 단체명의로 개최하는 골프대회 등의 참여자들이 장학기금 조성

- 충남도 소유 도립공원, 도립박물관 등을 이용하여 장학기금 확충
- 충남도 관리 공원이나 박물관 입장료에 일부 장학기금 부과

## IV. 정책과제

### 1. 장학회 육성과제

구 분	주요내용
재단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2011년)</li> </ul>
사업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우수인재 및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사업</li> <li>●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li> <li>● 학생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li> <li>● 교육운영 개선 사업</li> <li>● 인재발굴·양성 정보화시스템 구축</li> <li>● 지역지도자의 발굴 및 양성지원</li> <li>●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등</li> </ul>
서울소재 학숙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학생 기숙사업 공동투자</li> <li>● 충청남도 단독 서울학사 건립</li> </ul>
기부자 예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회 정관에 기부자 예우 명시</li> </ul>
장학수혜자의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학수혜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li> <li>● 장학수혜자와 장학회 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시스템 구축</li> <li>● 장학수혜자간 조직 결성 및 운영 등을 통한 장학회와 장학수혜자, 장학수혜자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ul>
유시장학회 및 시군장학회와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장학회 장학수혜 대상자 선발시 시군장학회 추천의무화</li> <li>● 충청장학문화재단과의 정보공유</li> </ul>

## 2. 장학회 기금조성 방안

구 분	주요내용
장학회 자체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오케스트라 설립</li> <li>• 충남학생국악단 설립</li> <li>• 문화, 예술, 스포츠단체와 연계하여 전시회, 연주회, 스포츠대회 개최하여 장학기금 조성</li> </ul>
지역사회와 협력 통한 조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기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탁자의 실명으로 장학기금 관리</li> </ul> </li> <li>• 소액분할 장기기탁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로 및 자동납부제 활용</li> </ul> </li> <li>• 충남도내 기업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부 일정금액 장학기금 조성</li> <li>- 주류 및 음료회사, 도시가스, 골프장, 건설회사, 금융기관</li> </ul> </li> <li>• 충남도금고 은행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인재육성통장, 충남사랑통장 상품개발 일부적립</li> <li>- 충남도민 1인 1계좌 갖기 운동 전개</li> <li>- 충남사랑장학카드 발급</li> </ul> </li> <li>• 충남도 출향인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향인단체 대표와 도지사간 간담회 개최</li> </ul> </li> <li>• 장학기금모금을 위한 출판기념회 개최</li> </ul>
충남도의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및 시군차원의 출연금 확대</li> <li>• 충남도 공무원 및 의회의원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및 의회,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공무원과 구성원의 자발적 기금후원</li> </ul> </li> <li>• 각종 이벤트 및 축제이용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도 주최 행사 입장권에 장학기금 부과</li> <li>- 충남도 주최 행사 참가비에 장학기금 부과</li> <li>- 충남도산하 기업 및 단체 주최 스포츠대회 참가비에 장학기금 부과</li> </ul> </li> <li>• 충남도 소유 도립공원 및 박물관이용 기금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장료에 장학기금 부과</li> </ul> </li> </ul>

[ 부 록 ]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1-13 조례 제 32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한다.

②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 사업
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 사업
5.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
6.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운영) ①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와 시장·군수 등은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매 회계연도 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조성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금의 재단 출연은 2008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2008. 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 관

제정 2008. 1. 16

개정 2008. 9. 1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북도민”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충청북도에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녀”라 함은 충청도민의 자녀 및 손·자녀를 포함한다.
3. “각 사업의 시행일”이라 함은 매년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시행하는 각각의 목적사업 시행 결정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이라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
3.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4.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위임·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8. 9. 19>
6.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7. 충북 발전을 위한 연구·공보·문화 창출 사업 <신설 2008. 9. 19>
8. 기타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는 충북도민과 도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되, 매년 시행하는 각 사업의 시행일 현재 6개월 이상 충북도민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이 법인이 제5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④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선정기준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제7조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그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10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과 제5조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부담금, 기부금, 보조금, 사업수익, 기타수익 등으로 조달한다.

**제11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다만 수익사업 실시 전에는 목적사업 회계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경비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결산결과 공지)**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7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등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이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일지라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3 장 임 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33인 이내
2. 감사 2인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 중 임원에 재임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③이사와 감사의 일부는 다음의 보직자를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1. 이 사 : 도지사, 도 교육감, 충북지역 총·학장협의회장, 도의회  
행정소방위원장·교육사회위원장, 각 시장·군수, 정책관리  
실장, 시군의회회장단 협의회장,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개정 2008. 9. 19>

2. 감 사 : 충청북도 감사관

④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만으로 해임한다.

⑤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 하는 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6.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인사, 회계, 장학금 규정 등 주요규정 제·개정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③삭제 <2008. 9. 19>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5 장 후원기구 등

**제32조(후원기구)** ①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운영 자문위원회', '재단 후원회', '인재양성 추진협의회' 등의 자문 또는 후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 또는 후원기구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법인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 6 장 사 무 국

**제33조(사무국)** ①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무국장을 임면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잔여재산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 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3”과 같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2008. 10. 22>

(별지 1)

###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3,2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현 금					3,200,000,000	

(별지 2)

###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수 량	평가액 (원)	비 고
현 금		3,200,000,000	

####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 고
현 금					3,200,000,000	

(별지 3)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임원선임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설립당초 임원임기
당연직 이사 (20)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2년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2년
	충북지역 총·학장협의회장	임 동 철	2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 필 용	2년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이 기 동	2년
	청주시장	남 상 우	2년
	충주시장	김 호 복	2년
	제천시장	엄 태 영	2년
	청원군수	김 재 옥	2년
	보은군수	이 향 래	2년
	옥천군수	한 용 택	2년
	영동군수	정 구 복	2년
	증평군수	유 명 호	2년
	진천군수	유 영 훈	2년
	괴산군수	임 각 수	2년
	음성군수	박 수 광	2년
	단양군수	김 동 성	2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장	연 영 석	2년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	남 동 우	2년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남 철 우	2년
선임직 이사 (4)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이 태 호	2년
	충북농협지역본부장	이 종 환	2년
	충원고등학교 교장	박 은 숙	2년
	(주)조선일보사 부장	유 태 종	2년
당연직 감사	충청북도 감사관	김 전 호	2년
선임직 감사	충북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임 종 곤	2년